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6 선고 2021가단50273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1. 주식회사 A
2. B
3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라
변 론 종 결 2022. 11. 11.
판 결 선 고 2022. 12. 16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,369,549원 및 그 중 194,072,600원에 대하여 2020. 10. 27.부터 2021. 4. 13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20. 6. 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0. 6. 4. 접수 제623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‘ 피고 회사 ’ 라 합니다) 와 각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서 피고 회사의 D 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원리금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, 피고 B 은 위 각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.

① 2014. 8. 4. 보증번호 F, 보증금액 100,000,000 원 , 보증기한 2015. 8. 4.(그후 2020. 7. 31. 까지 연장), 대출자 D 은행

② 2016. 6. 29. 보증번호 G, 보증금액 90,000,000 원 , 보증기한 2017. 6. 29.(그후 2020. 6. 26. 까지 연장), 대출자 기업은행

나 . 피고 회사가 위 가항 기재 은행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20. 10. 26. D 은행에 102,153,852 원을 , 같은 날 기업은행에 91,918,748 원을 각 변제하였고 ,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2012. 12. 1. 부터 2016. 1. 31. 까지는 연 12%, 2016. 2. 1. 부터 2020. 5. 31. 까지는 연 10%, 2020. 6. 1. 부터는 연 8% 이며 , 원고가 위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382,929 원이고 ,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증료는 914,020 원입니다 .

다 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(이하 ‘ 이 사건 부동산 ’ 이라 한다 .) 은 2006. 2. 20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6. 4. 3. 접수 제 39140 호로 H 으로부터 피고 B앞으로
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2020. 6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2020. 6. 4. 접수 제 62305 호로 피고 B 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한편 2020. 6. 2.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피고 B 명의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1 내지 8 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 및 피고 B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,369,549 원 (대위변제금 194,072,600 원 + 대지급금 382,929 원 + 추가보증료 914,020 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4,072,600 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20. 10. 27.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21. 4. 13. 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6. 2. 20. H 과 피고 B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망 I 과 피고 B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매도인인 H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,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 의 책임재산에 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 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2006. 2. 20. 이 사건 부동산을 H 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망 I 과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C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앞으로

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약 14 년간 누구도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거나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, ② H 이 2006. 2. 20.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망 I 과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 매매대금도 망 I 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H 의 진술만으로는 망 I 이 피고 B 을 단순히 대리하였거나 망 I 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피고 B 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, ③ 피고 C 스스로도 피고 B 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(피고 B 역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.) 등에 비추어 보면 , 2006. 2.20. 이 사건 부동산을 H 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망 I 과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성학

[별지 목록]**부동산의 표시**

1. 대전광역시 서구 대 120.7㎡

2. 대전광역시 서구

위 지상

백물및시멘트비둘솔레브지붕

단층주택

49.74㎡

